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.10.1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민·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, 복지와 보건의 연계·협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(안 제2조)
- 나.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부구청장·사회복지사무소장·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됨. (안 제3조)
- 다.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복지지원과장,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함 (안 제4조)
- 라.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(안 제6조)
- 마.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각 협의체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2조)
- 바.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(안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·제1조의4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,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①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②협의체는 사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·단체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
**제3조(구성)**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

②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부구청장·사회복지사무소장·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
4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5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③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**제4조(실무협의체)**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
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복지지원과장,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
1.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- 2.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자
- 3.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자
- 4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
- 5.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④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임기)**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해촉)**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8조(회의 등)**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회의록)**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- 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
3. 심의사항

4. 심의결과

5. 기타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간사)**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

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11조(의결사항의 처리)**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의견의 청취)**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공청회 등의 개최)**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4조(경비 지원)**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